

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10692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마을만들기지원담당	사회적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서자경	임장식	이승복	김석진	김병환	11/24 김영배
협 조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영성을 위한 -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위탁 계획

2014 . 11.

성 북 구
(사 회 적 경 제 과)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영성을 위한 -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재위탁 계획

우리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통합센터 구축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I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II 기본 방향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 제고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마을만들기 분야 및 사회적경제 분야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성북구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해도, 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 관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Ⅲ

추진 개요

-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 위탁기간 : [2015.1.1. ~ 2017.12.31.\(3년\)](#)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 및 비전을 고려한 사회적경제가치와 마을순환경경제 실현을 위한 법인(단체) 우선 고려

□ 추진절차

공개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심사	수탁기관 선정 및 통보	위·수탁 협약체결
공고 15일 (*재공고 5일)	2일간 (*추가접수 2일)	운영위원으로 구성	7일이내 통보	협약의 이행보 증

□ 심사항목 및 배점 : 5개 분야 12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

-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 (2항목 / 10점)
- 사업계획(시설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4항목 / 40점)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2항목 / 15점)
- 사회적가치 및 마을 순순환경제 노력 (3항목 / 30점)
- 수탁법인(단체)의 재무상태 (1항목 / 5점)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최고 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1개 이하 법인(단체) 접수 시 재(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
- 재(연장)공고 후 1개 법인(단체) 접수 시 선정심사 하한점수제 적용

□ 위수탁협약 체결 : 협약시 위수탁 조건 등 상호 협의

- 통합센터구축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 등 사전 협의(접수 시 안내)
- 일시연장(1회/90일한도)에 대한 협의

IV

추진배경

□ 기존 수탁기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

- 수탁기관 : (사)나눔과 미래(이사장 : 송경용)
-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 중간지원조직 통합센터 구축 계획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구의회 상정 : 2014. 11월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사회적기업허브센터+사회적경제지원단

□ 통합센터 구축 이전 기존 수탁기관 일시연장(90일) 여부 타진

- 기존 수탁기관의 「일시연장 불가」 의사 확인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종료(2014.12.31.) 시점과 통합센터 구축 추진 시점(2015.1.1. 조례공포 이후 위탁 추진)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일시연장 의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사무의 공백 없이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용어의 구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 ①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 ②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 ③ 일시연장 :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IV

세부추진계획

□ 위탁 사무 및 시설내용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6조
 -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보고
 -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전파
 -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대상 시설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위치 :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80-8)內 3층(사무실일부)
- 예산의 지원
 -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성실히 운영

□ 추진일정

- | | | |
|------------|-------|---------------------------|
| ○ 모집공고 | ----- | 2014. 11. 24 ~ 12. 9(15일) |
| ○ 신청서 접수 | ----- | 2014. 12. 10 ~ 12. 11(2일) |
| - 재공고 | ----- | 2014. 12. 12 ~ 12. 17(5일) |
| - 추가접수 | ----- | 2014. 12. 18 ~ 12. 19(2일) |
| ○ 신청단체 심사 | ----- | 2014. 12. 23(화) |
| ○ 수탁자 결정통보 | ----- | 2014. 12. 26(금) |
| ○ 위·수탁협약체결 | ----- | 2014. 12. 29(월) |
| ○ 사무인수인계 | ----- | 2014. 12. 31(수) |

※ 1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연장공고 및 추가 접수 실시하며, 연장공고 이후에도 접수 기관이 없는 경우는 위탁 계획 전면 재검토, 단일기관 접수할 경우는 하한 접수제로 선정 심사 추진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 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응모자격 및 위탁조건
- 제안서(신청서) 및 접수 관련사항, 구비서류 등 제안서 제출기간
-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 등

○ 공고기간 : 최소 15일 이상(재공고 시 5일 이상)

○ 신청(접수)기간 : 2일(추가접수 시 동일)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으로 구성

○ 개최개요

- 일 시 : 2014. 12. 23 14:00 ~ 종료시까지
- 장 소 :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참 석 자 : 15명(운영위원)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 심사
- 평가원칙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심사위원의 최고 득점 단체 선정
 - 신청 자료에 의하여 서면심사 및 위원 상호 토의로 평가
 - 신청접수순으로 서면심사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 신청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함.(사전통보)

- 평가항목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조례 제 27조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계획(사업 및 시설)의 적정성(실행가능성, 참신성) 및 수행능력
- 지역사회와의 관계(지역 또는 단체 협력성)
- 지역사회 기여도(사회봉사실적, 외부기관 평가 포상)
- 시설운영의 책임성(수탁기관의 재무상태)
-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구정 정책과 마을만들기의 비전 반영)

- 결정방법

- 심사평가 결과 최고득점을 얻은 단체 또는 법인 선정
(심사위원 점수 합산 / 참석위원=평균득점의 최고득점단체로 결정)
-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기관의 적격성과 실적, 수탁법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 **【붙임 4 평가표 참조】**

□ 수탁기관 선정

○ 신청 자격

-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 정치적,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
- 시설운영의 책임성 및 공신력

-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
- 사업계획(사업 및 시설)의 적정성(실행가능성, 참신성) 및 수행능력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사회봉사실적, 외부기관 평가 포상)
- 사회적 가치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
- 사회적경제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배점 항목 부여
- 마을만들기사업 및 사회적경제분야 관련 수행능력 여부 검토
- 마을만들기에 대한 참여 및 이해도에 대한 우선 고려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2개 기관 이상 접수 시 심사를 원칙
 - 연장공고 및 추가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기관이 신청 하였을 경우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구청장이 결정

○ 제출서류

-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 【붙임 1】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붙임2】
- 수탁사무신청 법인·단체 현황 【붙임3】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의 정관 / 대표자 이력서 / 2013년도 결산서

○ 모집공고 : 2014. 11.24 ~ 12. 9(15일간)

- 게시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안 : 【붙임 6】

- 신청서 접수 : 2014. 12. 10 ~ 12. 11(2일간)
 - 장 소 : 성북구 사회적경제과(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수탁자선정 : 2014. 12. 23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발표 : 2014. 12. 26(선정수탁자에게 개별 통보)
 - 협약체결 : 2014. 12. 29(협약서는 본 계획과 별도로 확정)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 협약 시 통합지원센터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도 협약변경(해지) 및 위탁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일시연장(1회/90일) 가능토록 명시

- 붙임 1) 성북구 사무 수탁신청서 1부.
 2)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수탁사무 신청기관 현황 1부.
 4) 수탁법인(단체) 심사 평가표 1부.
 5) 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 1부,
 6) 모집공고(안) 1부. 끝.

【붙임 1】

성북구 사무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단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단체명			
기구(직제)	(필요시:첨부)		
인 력	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기타사항	(참고자료 많을시:첨부)		

성북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 . .

첨부 : ①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
 ②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③ 수탁사무 신청 법인·단체 현황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⑤ 법인·단체의 정관
 ⑥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⑦ 법인·단체 2013년도 결산서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고 15권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성 북 구 청 장 귀하

【붙임 2】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명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
- -

4. 연도별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경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편익시설 설치, 골목길 담장허물기,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주택사이 정원조성사업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 마을만들기 교육 : 마을학교 운영, 도시아카데미, 주민 교육, 연구사례발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 마을알기, 마을축제, 동아리, 전시회, 마을신문, 소식지, 공동텃밭 등 공동체 형성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기업 등

5. 연도별 사업 로드맵

세부 로드맵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예시) 담장허물기사업 12개소	5%	10%	2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실계 용역	착공(발주)	준공 7개소	실계 용역	착공(발주)	준공 9개소	실계 용역	착공(발주)	준공 9개소	실계 용역	착공(발주)	준공 9개소	
· · ·													

※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특성에 맞추어 작성

6. 2015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일시, 장소, 참가인원,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

○

·

·

○

·

·

※ 반드시 주민 참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방법, 추진일정 포함

7.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계획

(사업명, 일시, 장소, 협력방법, 참가인원, 추진일정 등 상세히 작성)

○

·

·

○

·

·

※ 반드시 주민 참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방법, 추진일정 포함

○ 지역연계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지역 단체			<input type="checkbox"/> 참여확정 <input type="checkbox"/> 논의 중 <input type="checkbox"/> 제안예정
			<input type="checkbox"/> 참여확정 <input type="checkbox"/> 논의 중 <input type="checkbox"/> 제안예정
			<input type="checkbox"/> 참여확정 <input type="checkbox"/> 논의 중 <input type="checkbox"/> 제안예정

8.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활용 계획

(직원수, 직위구성, 업무분담 등 상세히 작성)

○

•

•

9.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확대 방안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 등)

○

•

•

10. 연간 소요예산내역서

(단위:백만원)

구 분		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운영비	인 건 비	기 본 급			
	센터 수용비				
소 계					
사업비	마을만들기 주민사업				
	마을만들기 교육 및 연구				
	마을 공동체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홍보활동 등				
	소 계				
총 계					

※사업비항의 사업명은 예시임.

【붙임 3】

수탁사무 신청기관 현황

1. 위탁 신청 법인·단체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설립목적 :
5. 설립일자 :
6. 구성원수 : 총 명(종사별로 표기)
7. 연 혁 :

년월일	연 혁

※ 내용이 많으면 별지 기록

8. 주요사업 실적(2012. 1월 ~ 2014. 11월현재)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주요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유관기관 공동 협력사업 여부
					※ 단체기재

- ※ 구분 : 마을만들기사업(시설사업, 교육, 공동체 형성사업), 유사사업으로 기재
- ※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기금 지원 사업실적 포함
- ※ 주요사업 내용에 지역 또는 기관단체와의 공동 추진실적 포함
- ※ 연도별로 작성

9.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2012. 1 ~ 2014. 11월)

구분	추진기간	지역사회 기여 내용(사회봉사실적 등)	비고

- ※ 구분 :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
- ※ 언론보도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10. 외부기관 평가 포상 실적(2012. 1 ~ 2014. 11월)

구분	수상일시	평가(포상)내용	기관명

- ※ 구분 : 기관 및 종사원으로 구분
- ※ 관련자료 사본 첨부

11. 특기사항

-
-

12. 기타사항

-
-

【붙임 4】

수탁법인(단체) 심사 평가표

□ 단체(법인)명 : _____

평가분야	평가항목	총점 (100점)	평가기준	배점	점수 부여	
1.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 (10점)	①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 마을만들기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5천만원 이상	5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		
			실적없음 또는 2천만원 미만	2		
	② 최근 2년간 정부, 지자체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점검 또는 평가 결과	5	5건미만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우수	5		
			5건이상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우수	4		
			점검실적이 없음(수탁실적 없음 포함)	3		
			5건미만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미흡	2		
			5건이상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미흡	1		
	소 계					
	2. 사업계획(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40점)	① 사업의 이해도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②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③ 조직운영 인력의 전문성 (센터장 및 직원)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④ 추진방법 구체성 - 추진전략, 접근방법, 추진일정 계획 수립 등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소 계						

평가분야	평가항목	총점 (100점)	평가기준	배점	점수 부여
3.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15점)	① 최근 2년간 수탁법인·단체 및 종사자의 지역사회 참여 실적 - 사회봉사관련 실적, 외부기관 평가 포상 등 포함	5	탁월	5	
			보통	3	
			미흡	2	
	②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성 - 사업계획 추진 상 지역 네트워크 활용	10	탁월(5개 이상 지역 및 단체)	10	
			우수(4개 이상 지역 및 단체)	8	
			보통(3개 이상 지역 및 단체)	6	
미흡(2개 이상 지역 및 단체)			4		
소 계				2	
4. 사회적가치 및 마을 순환경제 노력 (30점)	① 수탁법인·단체의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등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10	사회적경제관련 법인 또는 단체	10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6	
			기타 법인 또는 단체	2	
	② 지역주민 참여 노력 -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또는 참여 등 반영 계획 여부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③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구축 또는 참여 등 반영계획 여부	10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부진			2		
소 계					
5. 수탁법인·단체의 재무상태 (5점)	수탁법인·단체의 재무상태 (자산보유금액)	5	5천만원 이상	5	
			5천만원 미만	3	
	소 계				
합 계					

총 점 : _____ (점)

심사위원: _____ (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5】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평가기준

① 수탁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공신력) : 10 점

1-1. 최근 3년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유사사업수행 실적 5점

구 분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실적없음	비고
점 수	10	8	6	4	2	

※ 국·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총 투입액

※ 사업수행 금액은 마을만들기 사업(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설사업, 리더육성, 공동체 조성 등)의 투입금액

1-2. 최근 2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점검 또는 평가 결과 5점

구 분	5건미만 지적 사항으로 처리 결과 우수	5건이상 지적 사항이나 처리 결과 우수	점검 실적이 없음(수탁실적 없음 포함)	5건미만 지적 사항이나 처리 결과 미흡	5건이상 지적 사항으로 처리 결과 미흡	비고
점 수	5	4	3	2	1	위탁기관 평가결과

※ 수탁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의 경우는 위탁기관의 평가결과 의뢰 후 회신에 의거함.

② 사업계획(시설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 40 점

2-1. 사업의 이해도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 시설운영, 위탁업무 등 내용 숙지여부 반영

※ 사업의 실행 가능성, 효과성 등 표현

※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위원 주관 평가

2-2. 재정운영 계획의 합리성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 ※ 제출내역의 항목별 적정여부
- ※ 소요예산의 과다 계상 등 낭비요인 여부(심사위원 주관 평가)

2-3. 조직 운영 인력의 전문성(수탁시 고용인력)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기 준	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2년이상 3명이상 확보	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2년이상 2명이상 확보	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1년이상 1명이상 확보	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 1년미만 1명이상 확보	경력 또는 전문 인력 미 확보

- ※ 제출된 종사자 명단에 표기된 사항 평가(관련 입증자료)
- ※ 유사분야 : 사회적경제분야 등 관련 사업 근무경력 인정

2-4. 추진방법 구체성(추진전략 및 접근방법, 추진일정 등)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 ※ 추진 방법의 구체화
 - 사업계획의 내실성, 사업별 로드맵 작성여부, 사업시기 및 기간 적정 여부
 - 추진 체계도 구축상황(심사위원 주관 평가)

3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 :

15점

3-1. 최근 2년간 수탁 법인·단체 및 종사자의 사회봉사관련 , 외부기관 평가 실적 5점

구 분	탁월	보통	미흡
점 수	5	3	2

- ※ 실적 건수가 많은 순으로 채점(종사자별 실적 누계)

3-2. 지역 기관 또는 단체 협력 사업계획 수립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기 준	5개 이상 지역, 기관 및 단체	5개 이상 지역, 기관 및 단체	5개 이상 지역, 기관 및 단체	5개 이상 지역,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미구축

- ※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관계 유지로 발전적 사업계획 제시 여부
- ※ 정량적 평가와 지역 연계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한 주관적 평가 혼용

4 사회적가치 및 마을 선순환경제 노력

30점

4-1. 수탁 법인 · 단체 유형

10점

구 분	사회적경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법인 또는 단체
점 수	10	6	2

- ※ 규정 기초를 반영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수탁법인 또는 단체의 유형 고려

4-2. 지역주민 사업 노력(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 ※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의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 적극 반영 -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위원 주관 평가

4-3.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 구축 등)

10점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점 수	10	8	6	4	2

- ※ 다양한 방법에 의한 사회적가치 실현 노력(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 :심사위원 주관 평가

5 수탁법인·단체의 재무상태

5점

구 분	기본자산 5천만원 미만	기본자산 5천만원 이상
점 수	3	5

【붙임 6】

성북구 공고 제 - 호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안)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1 월 일

성 북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현황

- 시 설 명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80-8)內 3층
- 규 모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등
 - 사무 집기 등 관리 및 운영
 -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무 위탁

○ 주요시설

시설명	층 별	면적	시 설 내 역
성북구마을 만들기지원센터	3	약120㎡	성북구 종암로 25길 29 지하1층 지상6층건물 內, 3층 일부

○ 위탁사업 내용

-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보고
-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전파
 -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 규정된 사업임.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문의

2.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11. 24 ~ 2014. 12. 9(15일간)
- 접수기간 : 2014. 12. 10 ~ 2014. 12. 11(2일간)
- 접수장소 :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본관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3. 신청자격요건

- 신청자격 :
 - 성북구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로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정치적,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4. 위탁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3년)

5. 위탁조건 : 통합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협약사항 상호 협의

6.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는 성북구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함.
 - 신청접수순으로 신청자료에 의한 서면심사(필요시 대면 심사)
- 선정기준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
 - 시설운영의 책임성 및 공신력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 능력은 선정기준에서 제외

- 사업계획(사업 및 시설)의 적정성(실행가능성, 참신성) 및 수행능력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기여도(사회봉사실적, 외부기관 평가 포상)
- 심사일시 및 발표
 - 심사일시 : 2014. 12. 23(예정)
 - 선정발표 : 2014. 12. 26 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 ※ 위탁단체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개별 통지함.
-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위탁자 선정 후 향후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
- 통합센터 구축 등 성북구 정책에 따라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변경가능

7. 제출서류

- ①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
- ②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③ 수탁사무 신청 법인·단체 현황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 ⑤ 법인·단체의 정관
- ⑥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 ⑦ 법인·단체 2013년도 결산서

※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A4용지 1권으로 일괄 편철하여 15권 제출

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식은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http://www.seongbuk.go.kr>)

8.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1법인·단체만 신청했을 경우 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하며, 연장공고 후에도 1법인·단체만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함.
 -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 02-2241-3912)로 문의하시기 바람.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